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

의 안 번 호 244

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18. 12. 6.

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

Ⅰ . 제안경위

○ 「2019년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 안」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8 조 제2항¹)에 따라 11월 1일에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

Ⅱ .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

○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52조2)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 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,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설치한 기금(이하 '공제기금' 이라 함)으로 같은 법 제15조3)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(이하 '공제회'라 함)가 같은 법 제54조4)에 따라 관리・운용하는 기금임

〈표 2-1〉 공제기금 설치현황

	기 금 명	설치 연도	근 거 법 령	설 치 목 적
l	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	2007	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	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, 공제 급여 충당

^{1) 「}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^{2) 「}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(기금의 설치 및 조성)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,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 제 및 사고예방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^{3) 「}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) ①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·도에 학교안전공제회(이하 "공제회"라 한다)를 설립한다.

^{4) 「}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기금은 공제회가 관리·운용한다.

1. 기금총괄

○ 2019년도 동 기금의 조성규모는 45억 3,700만원으로 2018년도
 조성규모(74억 5,600만원)보다 △39.1%, △29억 1,900만원
 감소한 규모로 확인됨

〈표 2-2〉 2019년도 공제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백만원, %)

	2018년도말	2019)년도	2019년도말	중 7	<u>'</u>
기 금 명	조성현재액 (A)	수입①	지출①	조성현재액 (B=A+⑦−ⓒ)	금액 (C=B-A)	비율 (C/A)
학교안전공제 및	7 456	6.040	0.750	4 5 2 7	^ 0 010	^ 2O 1
사고예방기금	7,456	6,840	9,759	4,537	$\triangle 2,919$	△39.1

 ○ 2019년도 기금수지총액은 142억 9,600만원으로 2018년도 (160억 2,100만원) 대비 △10.8%, △17억 2,500만원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

〈표 2-3〉2019년도 공제기금 수지 총괄

(단위: 백만원, %)

		수	입 계	획			지	출 계	획	
항 목		2019년도	2018년도	증	감	항 목	2019년도	2018년도	증	감
9	٦	2019-11-	2010-11-		비율	8 7	2019-11-	2010511		비율
합	계	14,296	16,021	△1,725	△10.8	합 계	14,296	16,021	△1,725	△10.8
전입	급금	6,282	5,452	830	15.2	비융자성 사 업 비	8,176	7,018	1,158	16.5
보 조	山	332	21	311	1,481.0	인 력 운 영 비	1,165	1,071	94	8.8
예차는 (전기)	호수 (음을)	7,456	10,185	△2,729	△26.8	기본경비	418	476	△58	△12.2
이자	수입	56	193	△137	△71.0	예 치 금 (차가)월급)	4,537	7,456	△2,919	△39.1
기타	수입	170	170	0	0.0					

2. 기금수지현황

(1) 수입계획

○ 2019년도 수입계획은 142억 9,600만원으로 2018년도말 기금 조성액 74억 5,600만원을 포함하여 공제료 수입, 보조금(지원금), 소방수익, 학교폭력구상금회수, 이자수입 등 2019년도 수입금 68억 4,000만원으로 구성됨

〈표 2-4〉 2019년도 공제기금 수입계획

(단위 : 백만원, %)

		2019년	도(A)	2018년도	증 감	
항 목	세 부 내 역		구성비	(B)	금액 (C=A-B)	비율 (C/B)
	합 계	14,296	100.0	16,020	△1,724	△10.8
전 입 금	공제료 수입	6,282	44.0	5,452	830	15.2
	소 계	332	2.3	21	311	1,481.0
보 조 금	교육감 판결금 정산	272	1.9	0	272	순증
	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	23	0.2	21	2	9.5
	교육활동참여자 보상비 부족분	37	0.2	0	37	순증
예치금회수	전기 이월금	7,456	52.2	10,185	△2,729	△26.8
이자수입	이자수입	56	0.4	192	△136	△70.8
	소 계	170	1.1	170	0	0.0
기타수입	소방수익	120	0.8	120	0	0.0
	학교폭력구상금회수	50	0.3	50	0	0.0

- 공제료 수입은「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2 조5)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의 의무가입자인 학교장이 납부함6)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으로
 - 2019년도 공제료 수입의 경우, 학생수는 감소(△20,727명)
 하였으나 공제료 단가(평균 828원)인상으로 2018년도 대비
 15.2%, 8억 3.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

〈표 2-5〉 공제료 수입 및 학생수 증감 현황

(단위: 백만원, %, 명)

	당해연도	수입(A)	당해연도	공제료	수입(B)	학생 (산출내역	수 기준)	공제료 단 (유	남가 평균 일)
연 도		전년대비 중 감		구성비 (B/A)	전년대비 증 감		전년대비 증 감		전년대비 중 감
2019	6,840	1,005	6,282	91.8	831	962,766	△20,727	6,023	828
2018	5,835	△2,131	5,451	93.4	△325	983,493	△62,218	5,195	30
2017	7,966		5,776	72.5		1,045,711		5,165	

※ 2019~2018년도는 기금운용계획서 기준이며, 2017년도는 결산서 기준임

• 학교안전공제회는 「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4항7)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, 공제급여의 지급실적,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 단가를 결정하고 있는 바.

^{5) 「}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)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. 다만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.

^{6) 2018}년도부터 학교업무경감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일괄납부 하고 있음

^{7) 「}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공제료)

③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 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,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

④ **공제회는**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 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의 지급 실적,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**공제료를 산정**하고 이를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2019년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는 교육부 고시금액보다 5% 인상⁸⁾된 6,023원(평균)으로 산정된 것으로 검토됨
- 동 산정 금액은 2018년도 공제료(평균 단가 5,195원)대비
 15.9% 증가한 것이고, 최근 3년간 공제료 평균 인상률
 (5.1%)9)보다 높은 것으로, 2019년도 기준 공제료 단가에
 대한 적정성 여부10)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〈표 2-6〉 2019년도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

(단위 : 원, %)

구	분	유	초	중	고	공제료 평균단가
2019년도	공제회계획 (A)	2,250	3,990	7,980	9,870	6,023
2019 년 그	교육부고시 (B)	2,150	3,800	7,600	9,400	5,738
2018년도	2018년도 공제회단가 (C)		3,390	6,890	8,550	5,195
공제회 계획 대비 교육부 고시증감률(D=(A-B)/B)		4.7	5.0	5.0	5.0	5.0
전년도 대비 공제료 증감률(E=(A-C)/C)		15.4	17.7	15.8	15.4	15.9

(단위: 원, %) 구분 2019 2018 2017 2016 2015 1인당 기준(평균)공제료 6,023 5,195 4,870 5,165 4,483 상 률 15.9 0.6 6.1 8.6

- 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료 총액의 현가 일치 적용(수지 상등의 원칙)
- 수년간 인상률 저하에 따른 수입과 지출 불균형 해소
- 비급여 항목 증가에 따른 지급 보험금 기금 확보 필요

^{8) 2019}년도 교육부 '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'(교육부고시 제2018-167호, 2018.10.30.) 1.~2. 생략

⁻ 다. 각 시·도공제회는 시·도별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, 학교급별 기준공제료 대비 5%이내 조정할 수 있다.

⁹⁾ 학생 1인당 기준(평균) 공제료 인상률

¹⁰⁾ 학교안전공제회의 2019년도 기준 공제료 대비 5%인상 사유

- 보조금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3조 및 제51조11)에 근거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수입으로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지원금(2,300만원), 교육활동참여자 보상비 부족분(3,700만원), 금년도 학교안전사고 판결금 지급 관련 정산 절차 개선12)에 따른 교육감 판결금 정산금(2억 7.200만원)으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
- 전기이월금은 전년도 이월금 감소로 2018년도 대비 △26.8%,
 △27억 2,900만원이 감소된 74억 5,600만원이고, 이자수입은
 이월금감소 및 저금리로 2018년도 대비 △70.8%, △1억
 3,600만원이 감소된 5,600만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
- 소방수익은 1억 2,000만원으로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8조 제2항¹³⁾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¹⁴⁾ 에 따라 공제회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소방안전점검사업에서 발생한 바, 이를 수입계획에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

^{11) 「}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)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[「]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1조(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공제자(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학생인 피공제자를 말한다)에 대한 공제료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^{1.~2.} 생략

^{3.}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

¹²⁾ 서울시교육청, 행정관리담당관-1615('18.02.20.) "학교안전사고 판결금 지급 관련 정산 절차 알림" 법원 판결 → 서울시교육청은 판결금 전체에 대하여 학교공제회에 지급 요청 → 학교안전공제회는 매년 11월 20일까지 지급한 판결금 중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위자료 등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정산 요청 → 서울시교육청은 검토 후 학교안전공제회에 지급

^{13) 「}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공제회의 사업)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^{14) 「}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10조의5(공제회의 수익사업 등)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(이하 "공제회"라 한다)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^{1.}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·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

^{2.} 소독·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

^{3.}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

(2) 지출계획

○ 2019년도 지출계획은 142억 9,600만원으로 예치금 45억 3,700만원을 포함하여 인력운영비(11억 6,500만원), 기본경비(4억 1,800만원) 및 비융자성사업비(81억 7,600만원)로 지출계획을 편성하고 있음

〈표 2-7〉 2019년도 공제기금 지출계획

(단위: 백만원, %)

	_		2019년.	도(A)	2018년도	(인위 · 택인원, 76) 중 감	
항 목	세	부 내 역		구성비	(B)	증감액 (A-B)	증감률
합계			14,296	100.0	16,020	△1,724	△10.8
		소 계	8,176	57.2	7,017	1,159	16.5
		소 계	7,387	51.7	6,059	1,328	21.9
	공 제	공제급여 (사고보상비)	6,820	47.7	5,883	937	15.9
.10.11	ㅇ 세 사업비	소송업무	432	3.0	146	286	195.9
비융자성 사 업 비		보상심사위원회	53	0.4	30	23	76.7
		비용의 보전	82	0.6	0	82	순증
		예방사업비	605	4.2	678	△73	△10.8
	학교안전	· 	72	0.5	160	△88	△55.0
	학교	고폭력피해지원	112	0.8	120	△8	△6.7
	소 계		1,165	8.1	1,071	94	8.8
인 력		급 여	886	6.2	884	2	0.2
운 영 비		수 당	206	1.4	187	19	10.2
		4대 보험	73	0.5	0	73	순증
		소 계	418	2.9	476	△58	$\triangle 12.2$
기본경비		업무추진비	34	0.2	34	0	0.0
		일반운영비	384	2.7	442	△58	△13.1
예 치 금	7	차기 이월금	4,537	31.7	7,456	△2,919	△39.1

- 2019년도 공제사업비 중 소송업무는 2018년도 대비 195.9%, 2억 8,600만원이 증액된 4억 3,200만원을 편성한 바, 주된 사유는 금년도 학교안전사고 판결금 지급 관련 정산 절차 개선¹⁵⁾에 따른 교육감 판결금 지원금(3억 2,600만원)의 신규 편성인 것으로 검토되며,
- 비용의보전은 금년도 소송 및 의료자문료에 편성되었던 항목을 2019년도부터 교직원 등에 대한 비용의 보전을 확대하고자 소송 업무와 별개로 구분하여 8,200만원을 분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됨
- 아울러, 2019년도에도 기금 수입(68억 4,000만원)보다 예치 금을 제외한 지출액(97억 5,900만원)이 많아 기금의 연도말 현재액이 감소(△29억 1,900만원)될 것으로 예상되기에,
- 공제회에서는 기금 감소 최소화를 위한 기타수입과 수익사업의 증대 등 다각적인 재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, 인력운영비 및 임차료 등 기본경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¹⁵⁾ 서울시교육청, 행정관리담당관-1615 ('18.02.20.) "학교안전사고 판결금 지급 관련 정산 절차 알림" 법원 판결 → 서울시교육청은 판결금 전체에 대하여 학교공제회에 지급 요청 → 학교안전공제회는 매년 11월 20일까지 지급한 판결금 중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위자료 등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청에 정산 요청 → 서울시교육청은 검토 후 학교안전공제회에 지급